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8)

자료제공 / 조달청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칙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Q.**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노무비(A) 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노무비 지수는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공사의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 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한 것을 사용한다.  
 ② 노무비 지수의 적용 시기는 대한건설협회가 시중노임을 조사 · 공표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 상·하반기 노임은 발표된 시점부터 적용(계약 체결일 및 조정 기준일 동일함)  
 ex) 2002. 8. 17일 계약 체결한 공사일 경우  
 → 노무비 지수적용 : 2002. 1. 1일 노임을 적용함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Q.** 회계예규 개정(2007.04.10)에 따른 기계경비 지수 산정 기준

**A.** ①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중 입찰시점 또

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국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만의 평균가격

②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외산 건설기계 합계액(신설된 품목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 건설기계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 건설기계로 전환된 건설기계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 표시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을 더한 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중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가격

관련 규정 :

② 적용 연도에 따른 조정기준일의 적용 환율(최초계약일 기준)

구분	적용환율
1999년 12월 31일 이전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 적용
2000년 1월 2일 부터	금융결제원 "기준환율" 적용

③ 적용 시점이 공휴일로 환율이 없는 날의 경우  
- 익일(다음날)의 환율을 적용(회제 41301-3324, '98.10.26)  
ex) 2004. 01. 10이 일요일인 경우 → 2004. 01. 11(월요일) 환율 적용

**<신규품목 발생시 환율 적용 기준>**

- 최초 계약시 적용한 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최초 계약이 1999년 이전 → 전신환 매도율 적용
- 최초 계약이 2000년 이후 → 기준환율 적용

관련 규정 :

- 원가계산 작성준칙 제36조
-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건설기계경비 산정"
- 회계통칙 "회제 41301-165, '00. 01. 22"
- 회계통칙 "회제 41301-177, '98. 01. 23"

**Q.** 회계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 외산 기계경비에 사용한 환율 적용기준이 2000년 1월부터 전신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A.** ① 기계경비에 사용한 환율적용은 기준시점일 또는 비교시점일이 속하는 연도초 최초로 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 단, 연도중 환율의 등락률이 ±3% 이상인 경우는 기준시점 또는 비교시점일의 환율을 적용함

**Q.** 조정기준일의 도래시점에 따른 외산 기계경비의 환율 산정방법

**A.** ① 외산 기계경비에 사용한 환율적용은 기준(비교) 시점에 속하는 연도초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함.(단, 연도중에 환율이 ± 3%(5%)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 시점일의 환율 적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 비교시점과 기준시

점의 가격지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외산장비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직전조정일의 외산장비가격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분	2005년 12월 31일 이전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찰일 (직전조정기준일)	5%	3%
조정기준일	5%	3%

관련 규정 :  
· 회계제도과-525, '06.3.9

**Q.** 조정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환율 적용은?  
- 익일 또는 직전일

**A.**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다음날) 환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예시)  
2005년 5월 1일이 공휴일(일요일)인 경우 ⇒ 환율적용은 익일(월요일) 5월 2일의 환율 적용함

관련 규정 :  
· 회계제도과-39, 2004. 01. 09  
· 회제 41301-3324, '98. 10. 26

**Q.** 지수조정률 산출시 재료비인 생산자 물가지수(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가스, 농림수산물)의 산정방법은?

**A.** ①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월간물가”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E), 농림수산물(F)의 지수를 사용한다.  
② 조정기준일이 2003년 12월 26 이후의 경우 - 발표 시점과 관계없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월 지수”를 적용한다.  
ex) 직전일 2002. 08. 14, 비교일 2003. 12. 30인 경우 → 생산자 물가지수 : 2002년 7월 지수와 2003년 11월 지수 적용  
③ 조정기준일이 2003년 12월 26 이전의 경우 - 생산자 물가 지수 적용은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함  
ex) 직전일 2002. 8. 14, 비교일 2003. 11. 31인 경우 → 생산자 물가지수 : 2002년 7월('02. 08. 06 발표) 지수와 2003년 10월('03. 11. 06 발표) 지수 적용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회계제도과-386, '04. 03. 19  
· 회계제도과-289, '04. 03. 05

**Q.**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기준년도가 변경된 경우 지수 적용방법은?

**A.** 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98. 7월부터 변경되어 생산

자 물가지수('95년도 기준)가 발표되었던 바,  
 ② 동 신 지수는 '98. 7월말 지수를 적용하여 지  
 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이 타  
 당할 것이며, '98. 6월말 지수를 적용하여 지  
 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생  
 산자물가지수('90년도 기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관련 규정 :

- 회계제도과 41301-141, '99. 01. 15자

② 당해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  
 산시 제비율을 적용함이 가능함

구분	적용요율 기준
산재보험요율(H)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고용노동부 발표요율 적용
고용보험요율(J) 건설퇴직공제부금비(K)	국토교통부 발표요율 적용

관련 규정 :

- 회제 41301-877, '03. 07. 21

**Q.** 물가변동 조정에 있어 2회 물가변동 기준시  
 점의 지수적용 방법은?

**A.** ①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2회 물가변동 적용시  
 점의 지수 적용은 1회 물가변동 조정시에 적  
 용한 조정기준일 지수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만, 1회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지수가  
 명확히 틀린 경우에는 수정하여 적용한다.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회계제도과-386, '04. 03. 19

**Q.** 각 비목군 지수 산정시에 적용하는 산재보험  
 료(H), 산업안전 보건관리비(I), 고용보험료(J),  
 퇴직공제부금비(K) 적용요율 기준은?

**A.** ① 각 비목군 지수는 발표된 요율 등을 지수화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Q.** 산재보험료(H) 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  
 험법령에서 총공사 금액중 노무비(직접노무  
 비와 간접노무비를 모두 포함)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지수산식

- H0 = A0 × 입찰일 당시의 산재보험요율

- H1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요율

\* H0 : 입찰일 당시의 산재보험료지수

\* H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지수

\* A0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text{산재보험료 지수 변동률} = \frac{H1}{H0}$$

③ 산재보험료의 비목군 조정계수 =  $h \times \frac{H1}{H0}$

\* h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계수

※ 계수는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다.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고시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지수산식 :

○ 입찰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I)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 × 입찰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 = c+d+e+f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I)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 = 변동전계수 × 지수변동률

$$\text{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변동률} = \frac{I}{I_0}$$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목군

$$\text{조정계수} = i \times \frac{I}{I_0}$$

\* i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수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Q. 고용보험료 지수(J) 산정 기준은?

A. ① 고용보험료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연도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제집비율)”중 고용보험요율에 노무비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지수산식

○ 입찰일 당시의 고용보험료 지수(J)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A0) × 입찰일 당시의 고용보험료율

○ 조정기준일 당시의 고용보험료 지수(J)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 지수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고용보험료율

\* J0 : 입찰일 당시의 고용보험료지수

\* J1 : 조정기준일 당시의 고용보험료지수

\* A0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text{고용보험료 지수 변동률} = \frac{J}{J_0}$$

③ 고용보험료의 비목군 조정계수 =  $j \times \frac{J}{J_0}$

\* j : 조정기준일 당시의 고용보험료계수

관련 규정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Q. 퇴직공제부금비(K) 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퇴직공제부금비율은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연도별 공사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제집비율)”중 퇴직공제 부금비율에 노무비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지수산식

○ 입찰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K0) = 입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0) × 입찰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율

○ 조정기준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 (K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퇴직공제 부금비율

- \* K0 : 입찰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지수
- \* K1 : 조정기준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지수
- \* A0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퇴직공제부금비 지수 변동률 =  $\frac{K1}{K0}$

③ 퇴직공제부금비의 비목군

조정계수 =  $k \times \frac{K1}{K0}$

- \* k : 조정기준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계수

관련 규정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Q. 국민건강보험료(L) 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총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

② 지수산식

○ 입찰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L0) = 입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0) × 입찰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율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L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율

- \* L0 : 입찰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지수
- \* L1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지수
- \* A0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변동률 =  $\frac{L1}{L0}$

③ 국민건강보험료의 비목군 조정계수 =

$1 \times \frac{L1}{L0}$

- \* l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계수

관련 규정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Q. 국민연금보험료(M) 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총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

② 지수산식

○ 입찰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수(M0) =

입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0) × 입찰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료율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료율

- \* M0 : 입찰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지수
- \* M1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지수
- \* A0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변동률 =  $\frac{M1}{M0}$

③ 국민연금보험료의 비목군

조정계수 =  $m \times \frac{M1}{M0}$

- \* m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계수

관련 규정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Q. 노인장기요양보험료(N)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지수산식

○ 입찰일 당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수 (N0) = (입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0) × 입찰일 당시의 건강보험료율) × 입찰일 당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수 (N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건강보험료율)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 N0 : 입찰일 당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수
- \* N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지수

- \* A0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수 변동률 =  $\frac{N1}{N0}$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비목군

조정계수 =  $n \times \frac{N1}{N0}$

- \* n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수

관련 규정 :

- 회계제도과-778(2010.05.18.)

Q. 물가변동 조정검토에 있어 지수조정률 산출 시에 공사손해 보험료의 적용 여부는?

A. ① 물가변동 지수조정률(K) 산출시 적용비목군은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공사손해보험료의 적용은 제외해야 한다.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조

